



제 433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검 토 보 고

〈 식용유지 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4
나. 제정안의 체계	8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	9
나. 식용유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안 제2장)	12
다.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 촉진(안 제3장)	17
라. 보칙	2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종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산 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식용유지 또는 국산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검토의견

“식용유지”는 콩기름, 참기름, 식용우지, 마가린 등의 식품을 일컫는 용어로, 유지¹⁾를 함유한 원료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을 뜻하며, 원료의 성질에 따라 (1) 식물성유지류, (2) 동물성유지류, (3) 식용유지가공품으로 구분됨.

[식용유지 개요]

구분		세부 식품유형
(1) 식물성 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식물(과채분 포함)으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 또는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한 것	① <u>콩기름(대두유)</u> , ②옥수수기름, ③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④미강유(현미유), ⑤ <u>참기름</u> , ⑥추출참깨유, ⑦들기름, ⑧추출들깨유, ⑨홍화유, ⑩해바라기유, ⑪목화씨기름, ⑫땅콩기름, ⑬ <u>올리브유</u> , ⑭팜유류, ⑮야자유, ⑯고추씨기름, ⑰기타식물성유지
(2) 동물성 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동물성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① <u>식용우지</u> , ②식용돈지, ③원료우지, ④원료돈지, ⑤ <u>어유</u> , ⑥기타동물성유지
(3) 식용유지 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①혼합식용유, ②향미유, ③가공유지, ④쇼트닝, ⑤ <u>마가린</u> , ⑥모조치즈, ⑦식물성크림, ⑧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호) 재구성

이러한 식용유지는 즉석식품, 소스류, 제과·제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므로, 식용유지산업은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1) 유지: 동물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글리세린의 지방산 에스터를 주성분으로 하며 동식물체를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다. 원료에 따라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며 식품, 의약품, 도료 따위로 각종 공업에서 널리 쓰인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런데, 2024년 기준 식용유지 원료의 국산 사용량은 3,276톤, 수입산 115만 6,820톤으로 국산 비중이 0.3%에 불과함.²⁾ 이는 1967년에 자급률이 7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³⁾되었으나 1985년~1989년 10.9%, 2010년~2014년 1.5%로 국산원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임.

이처럼 식용유지의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국내 식용유지의 가격 및 수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2022년 브라질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대두⁴⁾ 생산 급감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식용유 가격이 전년 대비 35.8% 증가(통계청 기준)하였고 일시적으로는 55%에 육박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⁵⁾, 이러한 수급 불안정으로 품질대란 등의 우려⁶⁾도 제기되었음.

[생활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식품(전체)	0.5	2.4	2.6	3.3	2.3	0.8	2.9	4.7	6.9	5.6	3.6	3.2
식용유	2.1	-1.5	-1.1	-3.2	-3.7	-2.0	-1.7	9.7	35.8	9.7	7.0	-4.2
쌀	-1.8	-2.3	-10.3	-5.4	27.1	8.4	0.8	9.4	-11.3	1.7	1.6	7.7
돼지고기	15.9	3.7	0.6	6.2	-3.6	-3.9	10.7	11.1	8.1	-1.5	1.9	6.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2024 식품산업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우리나라 식용유지 산업의 발자취」(신효선, 2017)

4) 대두는 식용유지 원료 중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함.

5) 「1년만에 식용유 55%·밀가루 45% 올랐다」(파이낸셜뉴스, 2022.10.10.)

6) 「원자재 수급난에 '식용유 대란'...'1인 2개 판매 제한」(YTN 2022.5.13.)

제정안은 이와 같이 국내 식품산업이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식용유지의 원료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통하여 국내 식용유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건강한 식용유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각 법률은 식량 및 식품의 자급목표, 계약재배, 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및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식품산업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식용유지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추가적으로 제정한다면 ① 법률 간 중복 또는 충돌로 인한 사업자 등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② 식품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정책에서 식용유지산업이 분리되면서 전후방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약화될 수 있으며, ③ 각각의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여 식용유지산업종사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제정안에 대해서는, 식용유지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도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식용유지 및 식품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반법인 「식품산업진흥법」 외에도 김치, 전통주 등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임.

[식품산업 육성 관련 개별 법률 현황(예시)]

법률명	제정년도	소관 부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99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2007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1950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법」	2011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진흥법」	2011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0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2019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1995	농림축산식품부
「차 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유지산업 육성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면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법 체계가 중복·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⁷⁾

나.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총 4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③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④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산업진흥법의 구성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식용유지산업 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용유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교육훈련)	
제3장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9조(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0조(계약재배의 장려)	
제11조(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2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제13조(단체의 설립)	
제14조(우선구매)	
제4장 보칙	
제15조(자료제출)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장)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식용유지의 안정적 공급과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유지”란 식용유지작물(파쇄분을 포함한다)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식용유지작물”이란 식용유지의 원료가 되는 유지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식용유지가공품”이란 식용유지작물과 식용유지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식용유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용유지작물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나. 식용유지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다. 식용유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라. 그 밖에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식용유지산업종사자”란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식용유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용유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용유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첫째,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내 식용유지의 안정적 공급과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제정안은 기존 법률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내용을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입법 의도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u>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u> 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u>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u>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u>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u> 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u>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u> 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안 제2조제1호는 “식용유지”를 식용유지작물로부터 얻은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하거나, 제조·가공한 것으로 정의하여, 제정안은 “식용유지”를 식물성 식용유지를 뜻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용유지는 식물성 및 동물성 식용유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정안에 식용유지의 개념에 동물성 식용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지 또는 배제할지에 대한 입법 의도를 명확히하고, 이를 법 전체적인 내용에 일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식약처 고시)을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식용유지”의 정의를 규정할 경우 양 법률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셋째, 안 제2조제3호는 “식용유지가공품”을 식용유지작물과 식용유지를 원료·재료로 가공한 식품·가공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1호는 “식용유지”에 대해 식용유지작물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식용유지가공품”의 정의에는 “식용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식용유지”는 다시 “식용유지작물”을 가공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두 개념이 서로 참조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로 인해 두 용어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하고 정의가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4조는 식용유지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함.

이는 동 제정안을 일반법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식품산업 전체를 지원·육성하는 「식품산업진흥법」 또한 식품산업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로서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⁸⁾하고 있으므로 양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이 우선하는지 모호한 것으로 보임.

나. 식용유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안 제2장)

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장 식용유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용유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식용유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4. 식용유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식용유지산업에서 국내산 식용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7. 식용유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식용유지의 유통구조 개선과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소비 촉진

8) 「식품산업진흥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정 안

진에 관한 사항

9. 식용유지 재배 농업인 및 식용유지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과 식용유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용유지작물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제 정 안

2. 식용유지작물 재배기술, 시설·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3. 식용유지를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식용유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산업화하기 위하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현재 식품산업 관련 법 체계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의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식용유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 식량 및 식품의 자급목표, 자급률,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식용유 등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6조의 실태조사는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에서 식품산업의 진흥과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실태조사는 식용유지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나, 식용유지산업종사자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도 중첩적으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그 밖에, 안 제7조의 연구·기술개발, 안 제8조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도 식용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⁹⁾ 및 제7조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유사·중복 우려 법률 현황]

제정안	유사·중복 우려 법규	주요 내용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u>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u>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u>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u> 등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실태조사)	○ 식품산업 통계조사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	○ <u>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u>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안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 농산물 <u>가공·식품 제조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u> 하고, 필요한 <u>지원</u> 가능
	○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 <u>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u>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u>지원</u> 가능
	○ 식생활 조사·연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1조)	○ 건전한 <u>식생활 확산</u> 을 위하여 <u>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연구</u> 추진
안 제8조 (교육훈련)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u>전문인력을 양성</u> 하고 <u>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u> 등 가능

9)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다.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 촉진(안 제3장)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약재배의 장려,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단체의 설립, 우선구매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3장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9조(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용유지작물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식용유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6.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단체의 설립) ①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첫째, 제정안에 규정된 각종 시책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당부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예산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식용유지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충 및 사업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현황]

제정안	현행 사업(2026년)
안 제9조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전략작물산업화지원('26년 예산액 564억원) 등
안 제10조 (계약재배의 장려)	○ 두류·맥류 계약재배('26년 예산액 525억원) 등
안 제11조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 농촌공간계획수립체계지원('26년 예산액 48억원) 등
안 제12조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26년 예산액 40억원) 등
안 제13조 (단체의 설립)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26년 예산액 51억원)
안 제14조 (우선구매)	○ 식품가공원료매입('26년 예산액 903억원), 밭식량작물 구매지원('26년 예산액 92억원)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둘째, 안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유지 작물의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계약재배는 생산자가 사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인도하는 생산방식으로, 농산물 생산자가 사전 계약을 통하여 미리 판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해진 물량을 생산하게 되므로 식용유지 작물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¹⁰⁾에서 농산물 계약생산 및 출하 등에 대한 유사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국산 식용유지 및 가공품을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산 식용유지가 안정적으로 생산되더라도 구매수요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생산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국산 식용유지를 우선구매를 요청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GATT¹¹⁾ 규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국산 우선구매 요청이 허용되며, ‘요청할 수 있다’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라는 행정지도 등도 내국민대우 의무를 적용받아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¹²⁾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³⁾

1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 GATT 제3조 제8항 (a)는 '본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여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에 관하여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국내산품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3) 현재, 개정안과 같은 범위의 대상에게 농산물(밀)을 우선 구매 요청하는 입법례가 존재함.

「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 보칙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자료제출 및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장 보칙
제15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식용유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첫째, 안 제1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런데, 안 제6조¹⁴⁾에서는 식용유지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필요한 경우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5조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는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임.

14)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과 식용유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안 제16조는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위탁하려는 것으로, 통상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밀산업 육성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셋째, 제정안은 청문¹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안 제8조¹⁶⁾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행정절차법」 제22조¹⁷⁾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15) 청문은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위법한 행정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임.

16) 제8조(교육훈련)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17)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청문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당사자 및 행정청에게 명확히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유사 입법례: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417